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이장자녀 장학금의 “생활비 장학금”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타 장학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 자격·지급 횟수 및 지급 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변경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시(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기준(안 제2조)

- 지급 고등학교·대학의 기준 명시

다. 장학금 지급 횟수 기준 마련(안 제7조)

- 장학금 지급 횟수를 ‘재학년수별 2회’로 한정

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신설(안 제8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학금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5. 4. ~ 2023. 5.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6973(2023.04.28.)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6973(2023.04.28.)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7961(2023.05.08.)]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

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3조 중 “장학금”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개시 후”를 “개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를 “장학금”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p>	<p><u>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이 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 는 이장자녀 <u>장학금</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생활비 장학금</u>----- ----- ----.</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u>고등학교</u> 및 <u>대학</u>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 람 중에서 선발한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 ----- <u>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u>-----.</p>
<p><u><신 설></u></p>	<p>1.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제3호 <u>에 따른 고등학교</u> 2. 「<u>고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u>대학교</u> 3. 「<u>평생교육법</u>」 제31조제4항에 <u>따른 전공대학</u> 4.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u>」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u>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u></p>
<p><u><신 설></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p>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후 이전까지 선정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및 심의) ①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생략)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제3조(추천) -----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개시 -----
-----.

제4조(선발 및 심의) ① 장학금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 -----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략)

<신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
연락처	(033) 330 - 2210